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9. 5. 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9. 5.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이 동 호

가.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산(시비)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채용한 감리원에 의한 직접감독 방법으로 개선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어 사문화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업무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여 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94년말로 종료되고,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한 감리원을 채용하여 직접감독 방법으로 개선·시행되고 있으며 '99. 4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점검시 동조례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문화된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각구 굴착건수를 보면, 마포가 유난히 굴착이 많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차후 굴착시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유사한 공사는 한데 묶어 굴착하므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알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산(시비)으로 우리구에서 직접채용한 감리원에 의한 직접감독 방법으로 개선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어 사문화된 동조례를 폐지 코자 하는 것 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제5069호)제15조 및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제1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